

<p>로서 해당공사 또는 공단의 설치조례에 서울특별시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비지를 무상으로 대부→삭제</p> <p>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양재대)        ○본 개정조례안은 “지방공사에 대한 체비지 무상대부 허용” 규정이 지방재정법시행령 규정에 위배되므로 이를 삭제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요구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</p> <p>○체비지에 대하여        -당초 건설교통부에서는 “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이 아니므로 지방재정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,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, 수익, 대부 등 사업시행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”으로 유권해석을 하여 지방공사에 대한 체비지의 무상대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했으나(1차회신)        -재질의 시 체비지는 공유재산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,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을 배제하고 지방재정법령에 따라 관리하는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취지에 맞지 않으나 현행 토지구획정리사업법(제66조)에서 체비지 “관리”의 지방재정법 배제 명문규정이 없어 지방재정법의 배제가 어려우므로 지방재정법 규정도 따라야 한다고 해석했고(2차회신)        -행정자치부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체비지가 공유재산이므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사는 무상대부 허용기관이 아니므로 동조례제2조의2 규정의 지방재정법시행령 규정에 위배되므로 삭제할 것을 요구했는바  <p>○양기관 간의 견해차이에 따라 일시 법령해석에 혼란을 초래한 게 사실이긴 하나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조례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제정토록 한 취지에서 보면 자치입법권의 제정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조항의 개정은 차치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관련 조항의 삭제는 불가피하다고 사료됨.</p> <p>4. 질의 및 답변요지</p> </p>	<p>○생략        5. 토론효지        ○생략        6. 소위원회 심사내용        ○소위원회 구성 없음.        7. 심사결과        ○원안가결(만장일치)        8. 기타 필요한 사항        ○없음.</p> <hr/> <p>서울특별시 체비지 대부료등부과 ·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 체비지 대부료등부과 · 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      제2조의2를 삭제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hr/> <p>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안에 대한 수정안</p> <p>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        안 제7조제2항 중 “20인”을 “22인”으로 하고, 동조제3항제2호 중 “의원”을 “의원 3인”으로 하며, 동조동항제3호 “종사자”를 “종사자 각 1인”으로 한다.        부칙 제1조 중 “1999년 1월 1일”을 “공포한 날”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안</p> <p>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·장애인·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, 그 관리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       제 2 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“노인”이라 함은 6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.</li> <li>2. “장애인”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.</li> <li>3. “청소년”이라 함은 2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.</li> </ol>
---	--